재정경제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8.(수) 10:00 배포 2026. 11. 18.(수) 08:00

수출 중고 자동차 원산지증명 대폭 간소화로 한-UAE FTA 특혜관세 길 열려

- 원산지소명서 등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서류 없이 차대번호 등으로 한국에서 제조·가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
- UAE와 우선 협의 완료,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
- UAE 외 타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기 위해 협의 추진 예정

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중동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, **원산지 증명 절차를 '차대번호(VIN)'* 확인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**한다. 특히, 지난 10월 14일 **UAE 관세당국과 동 간소화 절차 도입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완료**함에 따라, 그간 실질적으로 막혀있던 중고차 수출 업계의 **한-UAE CEPA**(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, 실질적 FTA) **특혜관세 활용이 가능**해질 예정이다.

* 차대번호(VIN):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는 17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로, 제조국 및 제조사, 생산연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

우리나라는 20개국에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**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**,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통상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세번변경기준*이나 부가가치기준**이 적용되나, 중고자동차의 경우 **신차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 소명자료**(BOM***, 원가자료 등) **확보 등이 어려워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.**

* 세번변경기준(CTH): 비원산지 재료가 수입되어 충분한 가공을 거친 후, 완성품의 품목번호(HS코드 4단위)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

** 부가가치기준(RVC):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(FTA 체결국)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

*** BOM: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의 상세 자재명세서

이에 재정경제부는 **한국에서 제조·가공된 사실만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** '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'을 마련하였다.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'차대번호'만으로 한국 내 제조

사실을 확인하며, **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**하기로 하였다. 아울러, 원산지증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의 발급은 **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에 의한 기관발급으로 한정**하였다.

재정경제부는 세번변경기준 및 기관증명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중 **최대 수출시장인 UAE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공식 제안**하였다. 그 결과, **UAE로부터 우리측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합의**(10.14)**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.**

향후 재정경제부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의 시행을 위한 **「FTA관세법 시행규칙」개정안을 내년 3월 중 공포**하고, 세관은 **4월 1일부터 UAE에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**할 계획이다.

이와 관련, 관세청은 2027년 4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고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정비하고,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이번 한-UAE 타결 사례를 발판 삼아, **타 협정국*과도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 협의를 적극 추진**할 예정이다.

* GCC(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 등), 조지아: 자동차 원산지증명에 세번변경 기준 및 기관증명 적용 협정국

재정경제부 진승하 관세정책관은 “이번에 마련·협의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FTA 협정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”라며, **“향후에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**고 말했다.

<재정경제부>	세제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	책임자	과 장	김창화 (044-215-44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예슬 (yeseul55@korea.kr)
<관세청>	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	책임자	과 장	김태용 (042-481-3230)
		담당자	사무관	황태훈 (kcsfcd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